

소 장

원 고 강용석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서초동, 삼우빌딩3층)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넥스트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4층 (서초동,삼우빌딩)
담당변호사: 박진식, 반형걸
(전화: 02-2052-6600 휴대전화:
팩스: 02-595-0006 이메일:)

- 피 고
1. 남희섭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서초동, 한림빌딩) 402호
 2.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7길 19 (당산동6가, 고암빌딩) (주)미디어오늘
 3.
서울 중구 소공로 48 (회현동2가, 프라임타워) 19,20,21,22F 이데일리
 4.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 (목동, 한국방송회관) 15층 PD저널
 5.
서울 중구 정동길 3 (정동, 경향신문사건물)
 6.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9 (도화동, 성우빌딩) 15층 8호 미디어스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남희섭은 금 5,000,000원,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은 원고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한 2016. 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17, 18,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고,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용산구에 출마예정인 자이고, 피고 남희섭은 사단법인 오픈넷 대표로 오픈넷 사이트에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원고를 모욕 및 명예훼손 하고,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피고 은 기자들로 오픈넷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보도하여 원고를 모욕 및 명예훼손 한 자들입니다.

2. 피고들의 모욕 및 명예훼손

가. 사단법인 오픈넷 남희섭 대표는 2016년 1월 13일 오픈넷 사이트에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합의금을 목적으로 형사고소라는 수단을 악용하는 작태”, “합의금 장사꾼”, “합의금을 목적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행위”, “강용석은 선량한 네티즌들을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행위”, “강용석이 모욕죄 합의금 장사와 비슷한 태도로 선거법 고소를 남발”, “자신의 불륜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사소통을 입막음 하기 위해 출마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정도” 등의 표현으로 단정지으며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감제 1호증)

(<http://opennet.or.kr/10927>)

나. 미디어오늘 기자는 2016년 1월 13일 16:57경 "강용석 '모욕죄 합의금 장사'에 주의하세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강용석 '모욕죄 합의금 장사'에 주의하세요", "강용석은 선량한 네티즌들을 협박해 합의금을 갈취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법률 지식을 악용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자신의 불륜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사소통을 입막음하기 위해 출마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정도", "강용석이 모욕죄 합의금 장사와 비슷한 태도로 선거법 고소를 남발", "강용석 개인이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 "합의금을 목적으로 형사고소라는 수단을 악용하는 작태"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원고를 모욕 및 명예훼손 하였습니다.(갑제 2호증)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09>

다. 이데일리 기자는 2016년 1월 13일 17:38경 "오픈넷 "강용석 모욕죄 고소 남발..합의금 장사 주의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합의금을 목적으로 형사고소라는 수단을 악용", "법률 지식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목적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강용석 변호사는 선량한 네티즌들을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행위", "강용석이 모욕죄 합의금 장사와 비슷한 태도로 선거법 고소를 남발"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원고를 모욕 및 명예훼손 하였습니다.(갑제 3호증)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41&newsid=03732646612517392&DCD=A00504&OutLnkChk=Y>

라. PD저널 기자는 2016년 1월 13일 11:52경 "사생활 의혹 강용석, 누리꾼 입 막으려 출마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 합의금을 목적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자신의 불륜 의혹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사소통을 입막음하기 위해 출마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닐지 의심스러운 정도”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원고를 모욕 및 명예훼손 하였습니다.(갑제 4호증)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7465>

마. 경향신문 기자는 2016년 1월 13일 17:20경 “시민단체 “강용석, 누리꾼 입 막으려 출마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합의금을 목적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자신의 불륜 의혹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사소통을 입막음하기 위해 출마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닐지 의심스러운 정도”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원고를 모욕 및 명예훼손 하였습니다.(갑제 5호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131720511&code=940100

바. 미디어스 기자는 2016년 1월 13일 16:46경 “강용석, 불륜 스캔들 비판 네티즌 무차별 고소, "합의금 장사 의혹"”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금전을 목적으로 형사고소라는 수단을 악용하고 있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형사고소라는 수단을 악용하는 작태”, “저작권 합의금 장사꾼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법률 지식을 악용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강용석은 선량한 네티즌들을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행위”, “당선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륜스캔들 입막음용 출마’라는 비아냥까지 회자되는 실정”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원고를 모욕 및 명예훼손 하였습니다.(갑제 6호증)

3. 피고들의 행위가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디어오늘, 이데일리, PD저널, 경향신문, 미디어스는 모두 포털사이트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로 그 파급력이 전 국민에게 미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용산구에 출마예정인 자로 금번 보도된 기사들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지만 현재의 법제상으로는 원고의 손해를 환산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위자료로 책정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의 이러한 직접적 재산적 손해를 반영하여 위자료 금액은 가능한 상향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945>)

4. 결 론

피고들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글을 인터넷상에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글의 내용, 게재 시점 및 게재 형식, 인터넷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 및 이 사건 게재 후의 정황 등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피고 남희섭은 원고에게 금 5,000,000원,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은 원고에게 각 금 3,000,000원씩 및 이에 대한 위 기사가 게재된 2016. 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지연이자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갑 제1호증 | 사단법인 오픈넷 보도자료 |
| 2. 갑 제2호증 | 미디어오늘 기사 |
| 3. 갑 제3호증 | 이데일리 기사 |
| 4. 갑 제4호증 | PD저널 기사 |
| 5. 갑 제5호증 | 경향신문 기사 |
| 6. 갑 제6호증 | 미디어스 기사 |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2. 담당변호사지정서

2016.01.15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넥스트로
담당변호사 박진식
반형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